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도서·벽지 등에 있는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류 등에 기생충 또는 칼날 등의 이물(異物)이 혼입된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6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를 포함하되,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3호의 서류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전문의"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5)의 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7 제7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미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씻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3) 1) 및 2) 외의 미물의 혼입	영업정지2 일	영업정지5 일	영업정지10 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5 일	영업정지10 일	영업정지20 일
3) 1) 및 2) 외의 미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2 일	영업정지3 일

별지 제33호서식의 제1쪽 제1호의 표 중 "식품등의 종류"를 "식품등의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⑰ 영업장면적란의 객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객석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	-----------------------------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영업장의 면적(m²) 및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의 제2호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12.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앞쪽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영업장 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²] 건물 외부 장소 [m²]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제출서류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4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업소의 소재지 외"를 "그 밖의"로 한다.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가.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

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증명하는 진단서"를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호·제3호, 제86조의2,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사 면허증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 시설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4 제 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라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4 제8호나목1)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